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5일, 윤영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9월 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1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줍깅 활동의 정의(제2조)
- 줍깅 활성화 계획의 수립(제4조)
- 줍깅 활성화 사업 추진내용(제5조)
-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줍깅 주간 지정(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환경보호 및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줍깅 활동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줍깅'이라는 단어는 우리말과 외국어의 합성어이며,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2023. 5. 22) 타 시도에서는 '플로깅', '쓰담달리기', '쓰레기 담으며 걷기'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타 시·도 플로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 명	공포일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21.11.2.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1.12.29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2.16.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2.10.12.

-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plogging)'이란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쓰레기를 '줍다'와 '조깅'을 합해 '줍깅'이란 우리말과 외래어의 합성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 '줍다'라는 의미의 스웨덴 'plocka upp'과 '느린 속도로 달리기'라는 뜻의 영어 'jogging'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플로깅은 2016년 스웨덴의 에리크 알스트룀(Erik Ahlström)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쓰레기봉투를 들고 조깅,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면서 눈에 뜨이는 대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을 의미함.(출처 : 다음 백과)

- 줍깅 활성화 계획의 수립(제4조)
- 줍깅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줍깅 주간 지정(제5조, 제6조)
 - 줍깅 활성화를 위한 줍깅 활동을 공적 영역에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폐기물 관리 조례」등 우리 구 조례에서 환경보호 및 주민 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이미 마 련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중복됨이 없이 사 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줍깅 활동의 최종 목적은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라고 볼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선책은 주민들의 자발적 운동이 바탕이 되므로 주민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줍깅 지원 및 활성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 현황>

조례명	조	내용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금천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제20조 (실비 지급)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조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의3 (구민의 참여)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 ·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주민운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